

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

2015. 1. 23 (토) 작성자 : 정은진(광운대 도서관)

일시	2015. 1. 23 (토) 15:10-17:05	장소	서울시 NPO 지원센터
참석자	정회원 참석 18명, 정회원 위임 72명 * 참석자 명단은 비공개		

확 인

직 위	이 름	날 인
협회장		
운영위원		
운영위원		

1부 : 2015년 활동보고

1. 개회선언

- 개회선언 (박종연 사무처장)
 -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전체 재적정회원 368명 중 1/5인 90명(위임장 72명, 참석 18명)이 넘었으므로 정족수 충족되어, 총회 개회가 성립되었습니다.

2. 개회사 및 인사말

- 개회사 : 이원규 협회장
 - 추운날씨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6차 정기총회 자리이다. 오늘 총회에서 는 2015년협회 활동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 및 정관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할 예정이다.
 -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물관리법개정과 2016 ICA 서울총회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.

3. 2015년 활동보고

- 현황보고 : 박종연 사무처장 (자료집 1~5P 참고)
 - 협회 조직구성 및 회원현황 보고 진행
 - 전년대회 회원은 총72명 증가하였으며 현재 총 653명이 회원임
 - 협회의 자산은 창립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부채 중 전세금을 2015년 상환하였으며, 부채부분은 노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.

- 2015년 활동보고 : 박종연 사무처장 (자료집 6~14P 참고)
 - 각 사업별 활동현황 소개 진행
- 부산지부(두레)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(자료집 15P 참고)
- 전북지부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(자료집 16P 참고)
- 대학기록관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(자료집 17P 참고)
-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(자료집 18P 참고)
- 국회기록관리연구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(자료집 21P 참고)

4. 2015년 결산보고

- 박종연 사무처장 (자료집 23~26p참고)
 - 2014년 대비 회비납부가 6백만원 정도 증가하였다. 이는 회비 자율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회원 증가도 역할을 하였다.

5. 감사보고

- 원종관 감사 감사보고서 (자료집 27P 참고)
- 정진임 감사 감사보고서 (자료집 28P 참고)

6. 질의응답

- 이상민 : 소통이 중요함. 국가기록원과의 소통도 중요함. 이러한 내용은 보고사항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. 협회에서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한 기관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현황도 신고 방안도 모색했으면 함.

2부 : 심의·의결 안건

1. 2016년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

- 이원규 협회장 :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설명 (자료집 30~38p참고)
- 질의응답
 - 이상민 : KARMA 4호 제작 이월금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. 수정해야 한다. 강좌진행의 경우 예산이 적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함. 장소와 들을 사람이 제공되면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임
 - 김진성 : p.32 ICA 발표지원관련 등록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인가?
 - 협회장 :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기준 60만원을 참가비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. 발표자는 절반이고 협회원인 경우 거기서 절반인 15만원을 지원 예정
 - 김진성 : 의견을 하나 제시하면 송년의 밤 행사와 4대 회장 선거를 같은 날 하면 어떠한가?
 - 협회장 : 선관위가 주관해서 회장선거 일정을 짜게 되어서 여기서 확정을 할 순 없다. 대신 선관위에게 이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조언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.
 - 이영기 : ICA 등록비 지원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지. 기대효과라면 협회이름으로 참가해서 하는게 나을듯. 기준이 없으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.
 - 협회장 : 협회원 참가의 다수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.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2부에서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다. 협회원에게 등록비를 지원할 경우 발표 자료 등에 협회 회원임을 명시하게 할 것이다.
 - 이소연 : 협회 홍보 브로셔 영문판 제작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.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건 곤란하며 제대로 하려면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것이다. 협회원들이 얼마나 ICA 총회에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협회원 등록비 지원 예산을 협회 브로셔 제작에 쓰는게 어떨까 한다. 달력 제작과 기록전문가 윤리강령의 경우에도 인쇄를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고 PDF로 제작해 원하는 이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 - 이영기 : 이런 인쇄물이 홍보나 멤버십 상승보다 협회 사업의 진행으로만 보여져서 예산 항목에서 제외하는게 어떨까 싶다.
 - 김진성 : 이런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. 통으로 하자말자 결정하지 말고 달력을 할지 다른걸 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돌리도록 했으면 한다.
 - 이소연 :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넉넉할 때 했으면 한다.
 - 이영기 : 예산이 큰 부분이어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. p.34의 기록관리 Q&A 계획안도 현재 페이스북 기록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이것보다 나은 안이 나올지 확

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힘이 많이 들 것 같다. p.36 특강사업은 협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으로 돌리는게 어떠한가. 이 경우 다양한 곳에서 이것을 하고자 고민할 수 있어서 중앙의 역할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- 협회장 : 지부 등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. 달력 및 기타 인쇄 부분은 효용성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서 진행하기로 하겠다.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점검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, 검토, 확정되도록 하겠다.
- 이영기 : 부채 관련 부분이 예산안에 빠져 있다. 회계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게 맞다.
- 협회장 : 예산안에서 빠진 게 맞다. 부채를 진 분들의 양해 아래 부채 청산 부분은 빼고 진행하였다.
- 이소연 : 협회 기념품 구입 등은 회장님께 빚진 것 같고 오동석, 황진현 선생 등 전 집행부들에게 진 부채는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. 달력, 간행물 등은 온라인 버전으로 돌리더라도 3년 상환 계획 등을 수립해 빚을 먼저 갚았으면 한다.
- 사무처장 : 현 협회는 수익부분이 안정성이 없는 구조이다. 평균 수익으로 인건비, 임대료 지출하면 끝이다. 어려움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한다.
- 협회장 : 실제 회비로는 4천만원 수준의 예산안이 나온다. 지금 내주신 내용들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.
- 이소연 : 정진임 선생이 쓴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.(p.29)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.
- 심의의결
- 사무처에서 제안한 2016년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에 대한 심의의결 진행
- 현장 참석 정회원 18명 중 17명 찬성으로 통과

2. 정관 일부 개정(안)

- 이원규 협회장 : 정관 제12조 및 제32조 개정(안) (자료집 39~40p참고)
- 정관 제12조에 대한 질의응답
- 이영기 : 감사도 선관위에서 구성하는 것인가?
- 사무처장 : 선관위에서 감사선출에 대해서 변경하면 다른 방식도 가능해진다.
- 이상민 : 그동안 감사는 선출한 것인가?
- 협회장 : 총회에서 추천에 의해 뽑혔다.
- 이영기 : 감사를 총회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달라져야 할 듯
- 김정현 : 감사가 중립에 서 있는 역할이기에 회장선거와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.
- 이상민 : 기존에 문제없었으면 같이 갔으면 한다.
- 이영기 : 감사를 총회에서 하는 것은 의미부여나 과정 부여가 덜하므로 총회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본다. 협회장 선거를 분리하고자 한다면 협회장 선거는 바뀌고
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떨까?

- 김진성 : 이영기 선생님 의견에 동의. 회장만 30일 이전에, 나머지는 이후로.
- 협회장 : 선관위가 공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떤가?
- 이영기 : 선관위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내용이면 2년에 한번 제도가 바뀌는 것임
- 사무처장 : 선관위 얘기가 나온 것은 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임. 이 규정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주체를 만들자는 것
- 이영기 : 굳이 감사까지 포함될 필요가 없음
- 안병우 : 감사가 이 방식대로 하려면 출마를 해야함. 30일 이전에 뽑기 어려움. 협회장과 감사 선출을 분리하는게 좋음
- 이상민 : 심의위원회가 선관위가 되는 부분을 정관으로 넣는게 필요함
- 사무처장 : 선출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는 현재 없음
- 협회장 : 선출관련 내용을 관련 규정으로 정비하도록 하자
- 사무처장 : 이 자리에서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자

▪ 정관 제12조 및 제27조에 대한 수정안건

* 제12조(임원의 선출)

① (유지)

② (수정)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에 따라 선출하되, 재임 중인 협회장의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.

③ (신규)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④ (유지) 기존 ③을 ④로 변경

* 제27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
3. (신설)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
▪ 심의의결

- 사무처에서 제안한 정관 제32조(회계연도)와 총회에서 수정제안 된 정관 제12조 및 제27조에 대한 심의의결 진행
- 현장 참석 정회원 18명 중 17명 찬성으로 정관 제12조, 제27조, 제32조를 일부 수정함

3. 폐회사

- 이원규 협회장

- 시간 관계상 예정되어 있던 기록물관리법 개정 및 2016년 ICA서울총회 관련 논의는 뒷풀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.
- 장시간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